

심 사 보 고 서

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
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2022. 9. 28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9월 19일

-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홍순덕 정책기획관)

가. 제안사유

-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우리 道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, 차별적 또는 권위적 표현 등 14가지 용어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속 어려운 용어(14가지)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일괄 개정
(안 제1조부터 제90조까지)

① 구거 → 도랑, ② 용이하게 → 쉽게, ③ 부의 → 회의에 부치다,
④ 회무 → 사무(또는 업무), ⑤ 쌍방 → 양쪽, ⑥ 절사 → 버리다,
⑦ 허위 → 거짓, ⑧ 잔임기간 → 남은 임기, ⑨ 수발 → 접수·발송,
⑩ 납골 → 봉안, ⑪ 감안 → 고려, ⑫ 입회 → 참관,
⑬ 강사료 → 강의료, ⑭ 통할 → 총괄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 등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여 도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충북도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찾아낸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, 차별적 또는 권위적 표현 등 14개를 정비하려는 것임.
 - 조례안은 “구거”, “용이하게”, “부의”, “회무”, “쌍방”, “절사”, “허위”, “잔임기간”, “수발”, “납골”, “감안”, “입회”, “강사료”, “통할” 을 각각 “도랑”, “쉽게”, “회의에 부치다”, “사무(또는 업무)”, “양쪽”, “버리다”, “거짓”, “남은 임기”, “접수·발송”, “봉안”, “고려”, “참관”, “강의료”, “총괄” 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.
 -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, 차별적 또는 권위적 표현의 용어 사용은 자치법규를 어렵게 하여 도민의 자치법규 편의성과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,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모든 도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

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
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통할하고”를 “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대학교 운영
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
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잔임기간이 6월”을 “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”로
한다.

제3조(「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」의 개정)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허위보고”를 “거짓보고”로 한다.

제4조(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북여성재단 설립
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허위보고”를 “거짓보고”로 한다.

제5조(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북연구원의 설
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”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6조(「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의 개정) 충북인재양성
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허위보고”를 “거짓보고”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119
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
무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
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9조(「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심의회에 부의하는”을 “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”으로
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10조(「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갈등예방
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건
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”를 “하자 책임 구분이 쉽고”로 한다.

제12조(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각각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13조(「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부의 받은 때에는 부의받은”을 “제출받은 때에는 그 안건을 받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”를 “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제15조(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4호 전단 중 “폐구거”를 “폐도랑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제1호 중 “감안한”을 “고려한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기타 허위서류의”를 “그 밖의 거짓서류”로 한다.

제17조(「충청북도 공인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허위 변조”를 “변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입회”를 “참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허위사실”을 “거짓사실”로 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19조(「충청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4호 중 “허위 그 밖에”를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0조(「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
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(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기업사
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
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
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감안해서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4조(「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
정)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5조(「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도시 및
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6조(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문화예술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7조(「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의 개정)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부의안건의”를 “안건의”로 한다.

제28조(「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입회하에”를 “참관 하에”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“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”를“(검사 또는 검수자
의 지정 및 참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입회하게”를 “참관하게”로
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입회한다”를 “참관한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입회자”를 “참관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입회자
가”를 “참관인이”로 한다.

제29조(「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미동
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“(강사료 지급)”을“(강의료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
외의 부분 중 “강사료”를 “강의료”로 한다.

제30조(「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
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10조제3항 중 “허위라는”을 각각 “거짓이라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31조(「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부의안전의”를 “안전의”로 한다.

제32조(「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3조(「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”을 “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”으로 한다.

제34조(「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소송이 취하(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우

제35조(「충청북도 소재·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소재·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감안해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6조(「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7조(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회에 부의될 의안”을 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”으로 한다.

제38조(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후단 중 “감안하여”를 각각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9조(「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0조(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41조(「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2조(「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10조제5항 후단 중 “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11조제5호 중 “심의회에 부의하는”을 “심의회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3조(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4조(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5조(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용이하며”를 “쉬우며”로 한다.

제46조(「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7조(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8조(「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납골시설”을 “봉안시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납골시설”을 “봉안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납골”을 “봉안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납골시설의 설치장소)”를“(봉안시설의 설치장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납골묘·납골탑 및 납골당 등 납골시설(공설 납골당 및 종교단체·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)”를 “봉안묘·봉안탑 및 봉안당 등 봉안시설(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·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공설납골시설”을 “공설봉안시설”로 한다.

제49조(「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”를 “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”로 한다.

제50조(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재난
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1조(「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재정계획
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각각 “회의에 부
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위원회에 부의할 안건”을 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”으
로 한다.

제52조(「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재정투자
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회에 부의할 안건”을 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
건”으로 한다.

제53조(「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저
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54조(「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
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55조(「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심의회에 부의하여야”를 “심의회 회의에 부쳐야”로 한다.

제56조(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7조(「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입회시켜야”를 “참관시켜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(「충청북도 주택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용이한”을 “쉬운”으로 한다.

제59조(「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60조(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허위,”를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61조(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각각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절사한”을 “버린”으로 한다.

제62조(「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3조(「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4조(「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65조(「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6조(「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7조(「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“(허위신고)”를“(거짓신고)”로 한다.

제68조(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9조(「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0조(「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1조(「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2조(「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3조(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74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 중 “통할하며”를 “총괄하며”로 한다.

제75조(「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”를 “그 밖의 헌혈권장을 위한 홍보에 적합하다고”로 한다.

제76조(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7조(「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8조(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79조(「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회무기록”을 “사무기록”으로 한다.

제80조(「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쌍방”을 “양쪽”으로 한다.

제81조(「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허위문구”를 “거짓문구”로 한다.

제82조(「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83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사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4조(「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5호 중 “감안한”을 “고려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입회하에”를 “참관 하에”로 한다.

제85조(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6조(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7조(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88조(「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부의사항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9조(「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하며”를 “사무를 총괄하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90조(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 중 “문서수발”을 “문서접수·발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